



제418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 포함>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56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3.
3. 회 부 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1인 단독가구가 늘고 있고, 이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

지난 2020년 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로부터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미혼 여성이며,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 청년 1인 가구에 견줘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이 11.22배나 높다고 나타남.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피고인의 성명, 나이 및 성범죄 요지 등의 고지대상 정보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이하 “아동·청소년 가구등”이라 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가구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성범죄 피해로부터 가장 취약하고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집단인 여성 1인 단독가구가 우편 고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정보의 고지 대상과 고지명령의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규정하고,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생략) <u><신설></u>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이하 이 조에서 “고지정보”라 한다)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1.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2. 여성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현행	개정안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6.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신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 전입신고가 된 제2항 각 호의 자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현행법상 신상정보의 등록 및 관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함.

○ 신상정보 고지와 관련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9조¹⁾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는 고지정보의 종류 및 고지 대상 등을, 제51조는 고지명령의 집행 방법 및 출생·입양신고 등에 따른 추가 송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고지정보의 고지 대상,

1) 「성폭력처벌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지명령의 집행 방법 및 고지정보의 추가 송부²⁾에 관한 사항을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규정하면서 여성 1인 단독가구를 고지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입법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성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단독가구가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³⁾에 따라 이들을 고지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고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⁴⁾

-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제5항⁵⁾은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교육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에 현행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2) 「청소년성보호법」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중간생략)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으로서 고지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3) 김지선·김영중·오현아·이정원·강지현,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 :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B-15, p.21

4) 등록정보의 고지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추가하는 개정안은 (중간 생략)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 p.7-8.]

5)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⁶⁾

○ 한편,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제52조제1항⁷⁾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고⁸⁾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제4항⁹⁾에 따른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임.

- 이에 비해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고지정보를 고지 대상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사무소 등의 게시판에 30일 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며, 같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상세주소를 포함하고 그 외 전출 정보가 추가됨.¹⁰⁾

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7)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및 모바일 앱

8)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⑥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9)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이하 “공개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10)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 제4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중간 생략)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 이에 고지 대상 외의 자는 읍·면사무소 등의 게시판에 게시된 고지정보를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거주지에 관한 정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한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세 주소까지 열람할 수 없게 됨.
- 참고로,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41조제1항¹¹⁾은 법원이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여성 1인 단독가구를 고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현행법상 신상정보의 등록·공개·고지의 입법 연혁 및 그 규율 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¹²⁾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제도¹³⁾에

11)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1. 4. 16., 2010. 4. 15., 제정]

제41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7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선고 2011헌바106,107(병합)

13)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중 법원이 고지명령을 선고한 자임. 「청소년보호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

대해 공개대상·기간이 제한적이고, 법관이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라는 목적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합헌 결정을 하였음.

- 한편, 동 결정에서 반대의견으로 일부 재판관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원천봉쇄할 수 있으며 그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거나 그 생활기반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헌법 이념에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다음으로,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추가할 필요가 인정되어 입법화하는 경우에도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 처벌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성폭력처벌법」 제정 당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집행하였고¹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에 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¹⁵⁾하여 성폭력범죄의 대상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되었음.

- 이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두 법률이 개정되어(2012.12.18.) 현행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공개·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는 것으로 각각 일원화되었음.
- 개정안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중 고지에 관한 사항을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에 관한 사항을 두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더욱이, 법률 제19337호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¹⁶⁾은

14) 법률 제10258호 「성폭력처벌법」 [시행 2011. 4. 16., 2010. 4. 15., 제정]

제34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제42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15) 법률 제11047호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12. 3. 16., 2011. 9. 15., 일부개정]

제35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고지명령의 집행) ①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제39조(공개명령의 집행) ①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한다.

16) 법률 제19337호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23. 10. 12., 2023. 4. 11., 일부개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 4. (생략)
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고지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등을 추가하였고, 고지명령은 현행 우편 송부 외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달리 개정안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고지 대상 외에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추가하고 고지명령 집행 방법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이 우편 송부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동일한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 대상 및 고지명령 집행 방법이 개별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게 됨.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여성 1인 단독가구를 고지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반대의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범죄 예방 등에 있어서 갖는 효과성 여부,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 및 그 규율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부하고, 읍·면 사무소 또는 동(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073